
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

2009. 10.



목 차

I. 개요 및 추진경과	1
II. 스팸현황 및 문제점	4
1. 스팸 개요	4
2. 스팸 현황	6
3. 환경변화에 따른 스팸대응의 문제점	8
III. 추진 전략	9
IV. 세부 추진과제	12
1.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	
가. 스팸머의 불법 휴대폰 개통 방지	
①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	12
② 악성스팸머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가입 제한	14
③ 명의대여 핸드폰 방지 민·관 공동 홍보	16
나. 취약점 개선을 통한 스팸문자 생성 억제	
① 문자메시지 1일 발송한도 축소	17
②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악용한 스팸발송 규제	19
다. 전송·수신 단계에서의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	
① 이통사,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	20
②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차단기능 개선	22
라. 스팸 신고편의 증진 및 재송신 방지	
①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화	23
②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	25
2. 이메일 스팸 방지대책	
가. 스팸방지를 위한 이메일 인증 강화	
①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차단	27
② 이메일 발신지 인증기술 도입 확산	29
나. 스팸전송 차단기술 이용 활성화	
① 실시간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보급 확대	31
3.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	
①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관리 강화	33
② 스팸규제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	34
4. 국제 공조 강화	
① 아태지역 스팸 공동대응체계 구축	35
V.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	36

I. 개요 및 추진경과

□ 배 경

-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사후적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방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

※ 경과 : 현황 및 문제점 분석('09.5~6월),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TF 운영(7~9월)

□ 대책(안) 주요내용

①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

- 스팸이 발생하여 전송되는 단계별로 취약점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 예방대책 강구

단 계	예 방 대 책
불법 핸드폰 개통	▶ 악성스팸머 및 저신용자에 대한 휴대폰 개통 수 제한 · 악성스팸머, 채무불이행자 등 : 이통사별 1대 · 저신용자(신용도 10단계 중, 7~10등급) : 이통사별 2대 ※ 기존, SKT-KT는 4대, LGT는 3대까지 개통(개인의 경우)
스팸문자 생성	▶ 문자 1일 발송한도 제한 : 1,000건 → 500건 ▶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“청소년 문자 무제한폰”에 대한 제재 (스팸발송 목적으로 활용 적발시, 해지 조치)
스팸문자 전송·수신	▶ 이통사,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개발·제공 ※ SKT는 기 구축·운영 중 → KT, LGT로 확대 적용 ▶ 제조업체, 핸드폰의 스팸차단 기능 강화 · 수신거부 번호 확대 : 20개 이하 → 200개 이상 · 스팸신고시 자동으로 수신거부번호로 등록하는 기능 추가
스팸 신고	▶ 이통사별 간편신고기능을 표준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개선 ▶ 신고된 스팸에 대해서 재송신 방지 · 신고목록을 전산화(KISA)하고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전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

② 이메일 스팸 방지대책

-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또는 비정상적인 서버에 의해 전송되는 이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책(가이드라인)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
 - ※ 악성 이메일이 주로 사용하는 포트(전송경로) 차단, 메일서버 진위확인 제도 도입
-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(Black List)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

③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

-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'주민등록 등초본', 국토해양부의 '차량등록 원부'를 활용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
 - '질서위반행위규제법'에 따른 체납자 제재방안 추진
 - ※ 주거가 불명확한 처분자가 25%에 달하며, 처분자 대부분은 저신용자층으로 추정
- 과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
 - ※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(750→1,500→3,000만원), 현재는 평균 1,500만원 수준

④ 국제 공조 강화

- 중국, 일본,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대한 공동 대응,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공유 등 협력이슈에 대한 공조 추진
 - 중국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추진

□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- 종합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해마다 연동계획(Rolling Plan)을 수립하여 실효성 제고
- 종합대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되는 2011년말까지 "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 30% 감소 효과" 기대

□ 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 작성 추진경과

○ '09. 5~6월 : 현황 및 문제점 분석

- 영역별(휴대전화 · 이메일 · 과태료 징수 · 국제공조)로 스팸대응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대책의 기본방향 설정

○ '09. 7~9월 : 「스팸방지 종합대책」 수립을 위한 TF 운영

- 유관기관 · 협회 · 통신사업자 등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 검토 · 협의

- 유관기관 : 중앙전파관리소, 한국인터넷진흥원
- 협회 :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- 사업자 : 기간통신사업자, SMS 중계사업자, 포털사업자 등

○ '09. 10월 : 「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」 마련

- 4개 영역별로 15개 세부 추진과제 도출

그 간의 추진실적

○ 사전수신동의 제도 도입('05.3월)

- 전화 · 팩스 광고 전송시에는 반드시 사전수신동의를 받도록 의무화

○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('06.3월)

- 문자메시지(SMS) 1일 발송량 1,000통 제한
-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제한

○ 휴대폰 간편신고 기능 서비스 도입('07.2월)

- 휴대폰 메뉴상에서 편리한 버튼 조작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
- ※ 현재 총298종 2,741만대 보급(57% 보급)

○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('08.9월)

- 불법스팸 전송자 서비스 계약 해지후 재가입 금지를 위한 신상정보 보관
- 광고 사전수신동의 예외사항 축소

○ 스팸분야 특별사법경찰권 확보('08.9월)

- 방통위 직할기관(중앙전파관리소)에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

II. 스팸현황 및 문제점

1. 스팸 개요

□ 스팸(spam) 정의

- 수신자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
< 정보통신망법상 매체별 광고전송 규제방식 >



□ 스팸발생의 주요 원인

- (스팸 전송자) 휴대전화, 이메일은 방송·옥외광고 등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하고 즉시성이 높아 유용한 광고수단으로 인식
 - 전송자 신원확인 및 추적·적발이 어려워 도박, 대출, 의약품 등은 밀한 불법거래 광고에 주로 이용
- (통신사) 스팸의 서비스 가입·이용을 방치하거나 사전 고지한 스팸차단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자율규제 노력 미흡
 - 중소기업 등은 스팸에 대한 인식과 기술 부족으로 스팸차단에 취약
- (이용자) 이벤트 참여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스팸 전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 부족
 - 일부 低신용층의 경우, 작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스팸 전송용 명의대여 핸드폰 개통에 활용되는 것을 묵인

□ 스팸의 폐해

- 스팸의 증가는 정보통신 매체의 편리성, 신뢰성, 효율성 위협
 - 스팸은 수신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시간낭비와 생산성 감소를 가져오고,
 - 메시지 전송·저장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 소모를 가중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IT 녹색성장을 저해

스팸 감축과 녹색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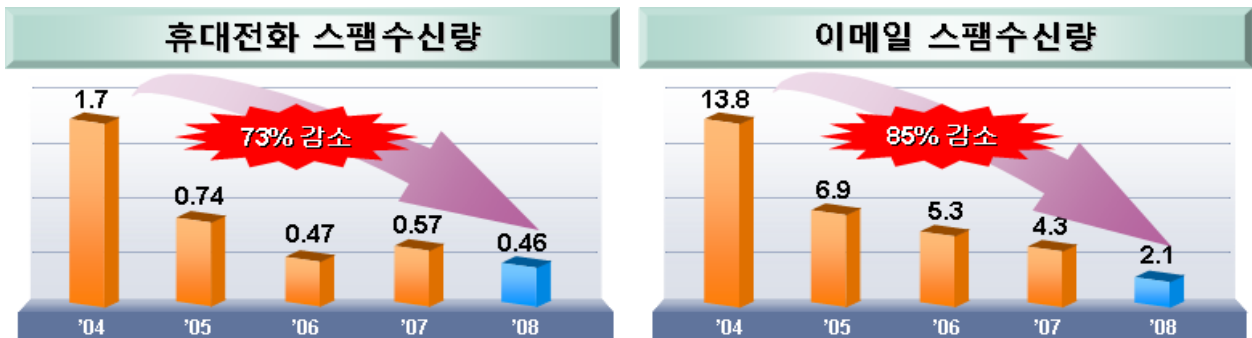
- ◆ '08년 전 세계적으로 메일의 80%(62조개)가 스팸으로 추산되며, 이를 삭제하고 정상 메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간 33TWh의 전력이 소비됨
 -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차단하면, 전 세계적으로 25테라와트(TWh)의 전력량 또는 230만대 차량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감소 효과
- ※ ICF(Intelligent Community Forum), 스팸메일의 탄소발자국 보고서(전자신문, 4.17일자)

□ 스팸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

- (법·제도) 불법스팸 발송 규제를 위한 법체계 마련 및 이용자 대상 불법스팸 고충처리
- (기술대응) 스팸 탐지·분석·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, 국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
- (자율규제) 사업자의 법규준수율 제고 및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관리·감독
- (인식제고) 사업자 대상 스팸대응 **Best Practice** 제공 및 이용자 대상 스팸방지요령 등 홍보

2. 스팸 현황

- 단속강화, 홍보 등의 영향으로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지속 감소
 - (휴대전화) '07년 원링(one-ring), 모바일인터넷 스팸(URL-SMS) 등 신종기법의 기승으로 스팸수신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,
 - 이통사의 원링스팸 탐지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'08년부터 다시 감소
 - (이 메 일) '08년 하반기, 대표적인 스팸 전송 사업자(맥콜로, 미국)의 폐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팸이 급감했으나,
 - 이후 보다 정교한 악성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다시 소폭 증가
- ※ 맥콜로(McColo)사의 폐업 후 세계적으로 이메일 스팸이 50~70% 감소했으나, '09년 들어 다시 이전의 80% 수준으로 복귀('09.1월, 시만텍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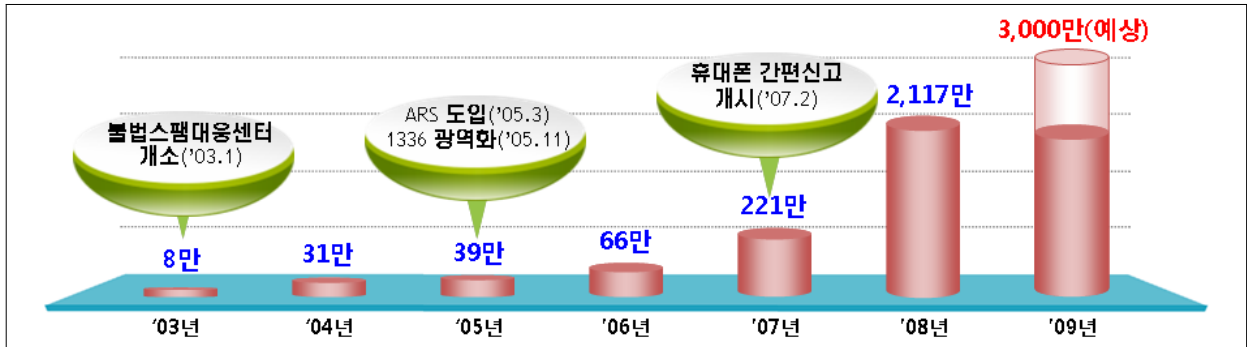
(자료 : 리서치기관)

< 스팸수신량 측정 방법 >

구분	휴대전화	이메일
조사대상	만 13~59세 휴대전화 이용자 1,000명 (성별/연령별/지역별 이통사 시장점유율 고려)	만 13~59세 이메일 이용자 1,000명 (성별/연령별 인터넷이용률 고려)
조사방법	구조화된 웹설문을 활용한 온라인조사	컴퓨터에 수신량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측정
표집오차	신뢰구간 95% 기준, 오차 ±3.4%	신뢰구간 95% 기준, 오차 ±3.1%
조사기관	한국리서치('09년 현재)	메트릭스('09년 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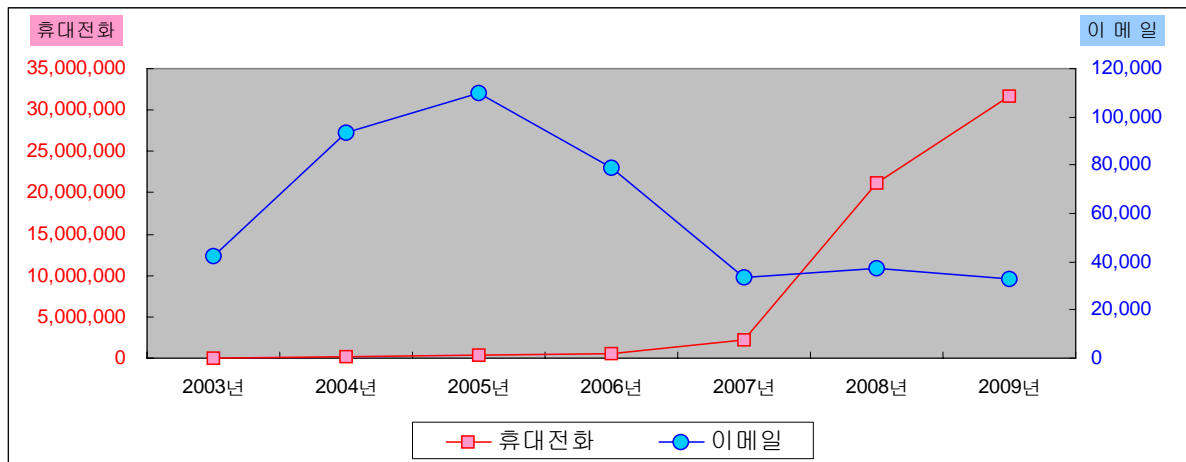
□ 불법스팸 신고접수 급증

< 연도별 스팸신고 접수건수 증가 추이 >



-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('03년) 이후, 스팸신고 방식을 간편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여 스팸신고 접수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
- 특히, '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' 도입('07년) 이후부터는 신고건수가 폭증하여 '09년에는 3천만건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

<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신고 접수건수 비교 >



- 간편신고에 따른 신고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국민의 고충신고가 이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
- 스팸 수신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신고방법이 간편해지고 이용자의 신고의식이 향상되어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

3. 환경변화에 따른 스팸대응의 문제점

□ 스팸 전송수법의 지능화

- 명의대여 핸드폰 개통이 스팸 등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명의대여 증가
- 보안패치 소홀, 백신 미적용 등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다수의 좀비PC를 통해 대량의 스팸을 분산 발송

□ 불법적·악의적 목적의 스팸 증가

- 불법 스팸전송자는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대여에 의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도박·대출 등 불법 콘텐츠의 스팸을 지속 발송
 - 금전적 이득이 큰 불법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써 스팸의 발송 수법은 지속적으로 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
 - 수신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

□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사후규제의 한계

- 스팸전송자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2%에 그치고 있으며, 수사기관이 기소·처벌한 사례도 미미
 - ※ 과태료 징수율 : '06년(1.3%) → '07년(1.0%) → '08년(0.9%) → '09년8월(2.2%)
 - 처분자 중 개인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(92%) 대부분 저신용자층으로 추정되며, 주거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(25%)
- 정부주도의 사후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스팸유통을 감축에 한계성 노출

Ⅲ. 추진 전략

기본 방향

- ▶ 정부주도의 사후규제를 민간이 참여하는 사전 예방적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
 - 스팸의 발생·전송·신고 단계별 취약요인 개선
 - 스팸방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 차단효과 향상

1. 휴대전화 스팸 방지

□ 스팸의 불법 휴대폰 개통 방지

- 스팸전송이 우려되는 자의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
- 통신사를 옮겨가며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악성스팸어 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가입 제한
- 이통사와 공동으로 명의대여 핸드폰 개통 및 스팸전송 방지를 위한 홍보

□ 취약점 개선을 통한 스팸문자 발생 억제

-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대폭 축소하여 대량 스팸발송 제한
- 청소년 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하는 스팸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규제 강화

□ 스팸 전송·수신 단계에서의 차단 효율성 제고

-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스팸여부를 이통사가 판단하여 차단할 수 있는 “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” 도입 활성화
- 매회 다른 번호로 수신되는 스팸메시지의 수신거부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신거부 등록번호 수 확대 및 기능개선

□ 스팸 신고편의 증진 및 재송신 방지

-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의 표준화를 통해 이동사별 편차 발생 및 신고접수 오류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스팸신고 편의 증진
- 스팸 신고인에게는 유사한 광고가 재전송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광고전송 사업자 대상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

2. 이메일 스팸 방지

□ 스팸방지를 위한 이메일 인증 강화

- 좀비PC를 통한 스팸발송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이메일 서비스의 인프라 개선 추진
- 발신자 정보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스팸 등 비정상메일을 걸러내는 이메일 발신지 인증기술의 도입 확산 유도

□ 스팸전송 차단기술 이용 활성화

- 개인·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팸을 손쉽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보급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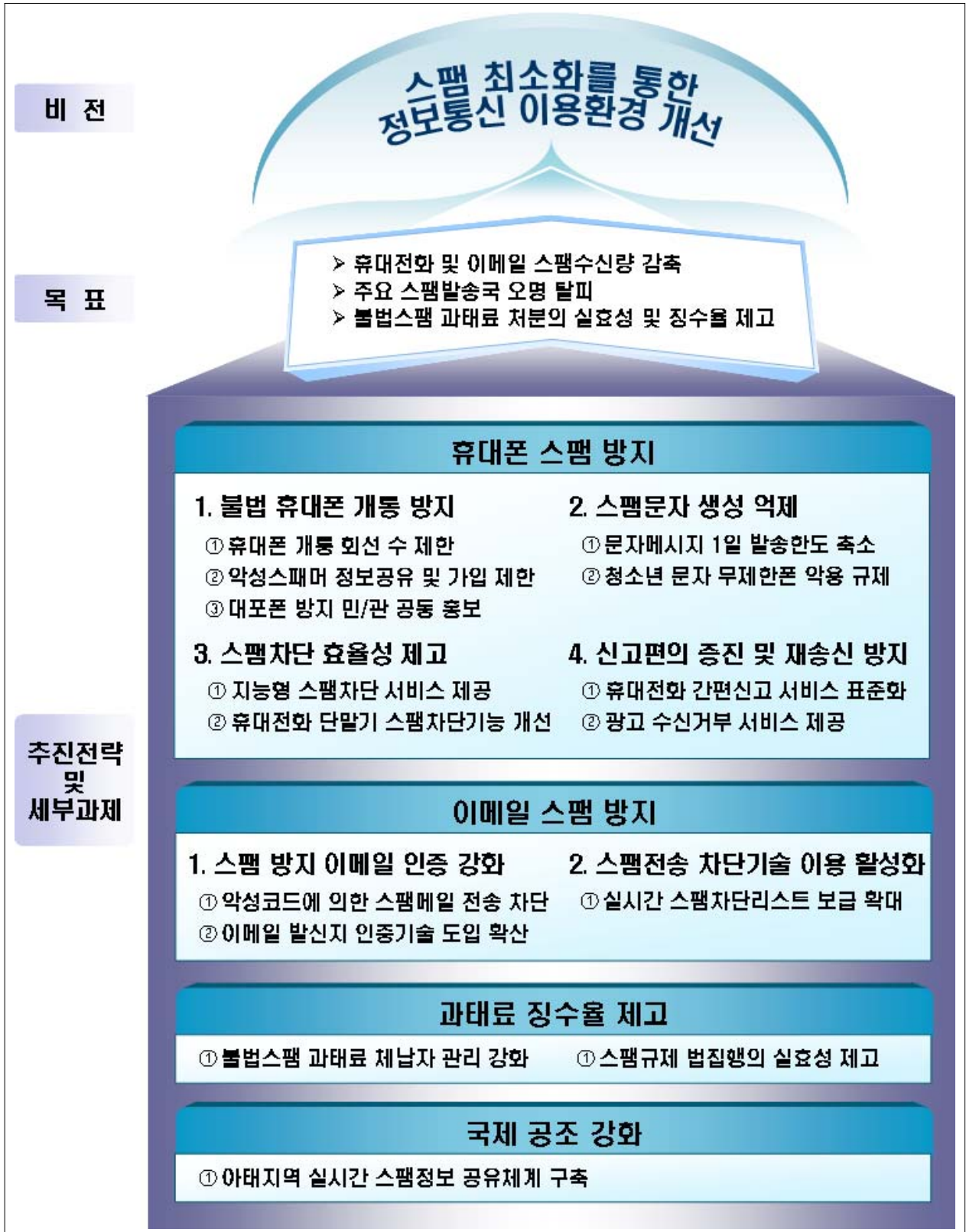
3. 과태료 징수율 제고

- 이용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스팸 신고처리 기준 및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
-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제재를 통해 징수율 향상

4. 국제 공조 강화

-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 실시간 스팸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경유 스팸전송 차단 등 공동대응

□ 추진 체계도



IV. 세부 추진과제

1.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

가. 스팸어의 불법 휴대폰 개통 방지

①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

개 요

○ 불법 명의 제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핸드폰 개통 수 제한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저신용자 등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스팸 전송에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

□ 추진 방안

○ 채무불이행자, 금융질서 문란행위자(사기범 등), 저신용자에 대한 핸드폰 개통 수 제한

- 현재 스팸어는 타인의 명의로 총 11개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으며 이를 불법스팸 발송용으로 활용

< 현행 이통사별 핸드폰 개통 기준(개인의 경우) >

이통사	SKT	KT	LGT	총
개통수	4	4	3	11

- 따라서, 이통사는 명의대여 등에 대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핸드폰 개통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

· 채무불이행자 ·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: 1대

· 저신용자(신용도 10단계 中 7~10등급에 해당) : 2대

- 이통사가 핸드폰 개통 전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관련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신용도에 따라 개통 수를 제한
- o 도용된 일반인의 명의로 다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우, 이통3사의 핸드폰 개통 수를 3대로 통일
- o 이통사는 핸드폰 개통 수 제한을 위한 약관 변경을 추진

개통 수 제한에 대한 법률 검토

- o 低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신이용권 제한에 대한 검토
 -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은 불법대출행위를 통한 명의대여 핸드폰 개설 및 부정사용 방지 목적임 (목적의 정당성 · 방법의 적정성)
 - 低신용자의 휴대전화 개통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개통만 제한하는 것이며 개선 후에도 이통3사에서 총 6대까지 개통 가능 (법익의 균형성)
 - 휴대전화 대출사기에 의한 명의대여 핸드폰 문제는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이 어려움 (침해의 최소성)
- o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(역무제공 의무)와 충돌에 대한 검토
 -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고려하여 휴대전화 개통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신용 정보 활용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통신역무 제공을 제한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
 - ※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(역무제공 의무) : 정당한 사유없이 역무제공을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
- o 선의의 이용자의 편익 저해에 대한 검토
 - 다수 선의의 이용자가 본인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부모, 자녀, 지인 등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,
 - 기존의 이용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, 신규 가입자는 실제 개별 이용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유도

□ 추진 일정

- o '09년 말까지 : 이통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
- o '10년 이후 :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 시행

② 악성스팸어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가입 제한

개 요

○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행정처분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개인·법인에 대한 핸드폰 개통 수 제한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스팸 처분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바꿔가며 서비스에 재가입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악성스팸어 상존
- 이통사간에 스팸 처분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불가능함

※ '08년 전체 이용제한 대상 개인·업체(11,704) 중 2회 이상 적발이 57% 차지

※ 일본은 '06.3월부터 이통사간 악성스팸어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유

□ 추진 방안

- 불법스팸에 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악성스팸어 정보를 이통사에 제공하여 서비스 가입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
- '08.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서비스 개통 수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

법 개정 추진 내용

○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제100조 요약 ('08. 11월 국회제출)

-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 자(개인, 법인)의 정보를 수집·보관하고,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음

- 이통사는 악성스팸어에 대해 핸드폰을 이통사별로 1대까지만 개통하는 방안을 약관개정을 통해 자율시행

- 이통사가 서비스 신청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불법스팸 전송 이력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 결정
- 대상자가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도용 등에 의해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하고 추가 개통 가능

○ KISA는 악성스팸머 DB를 구축하고 상시 조회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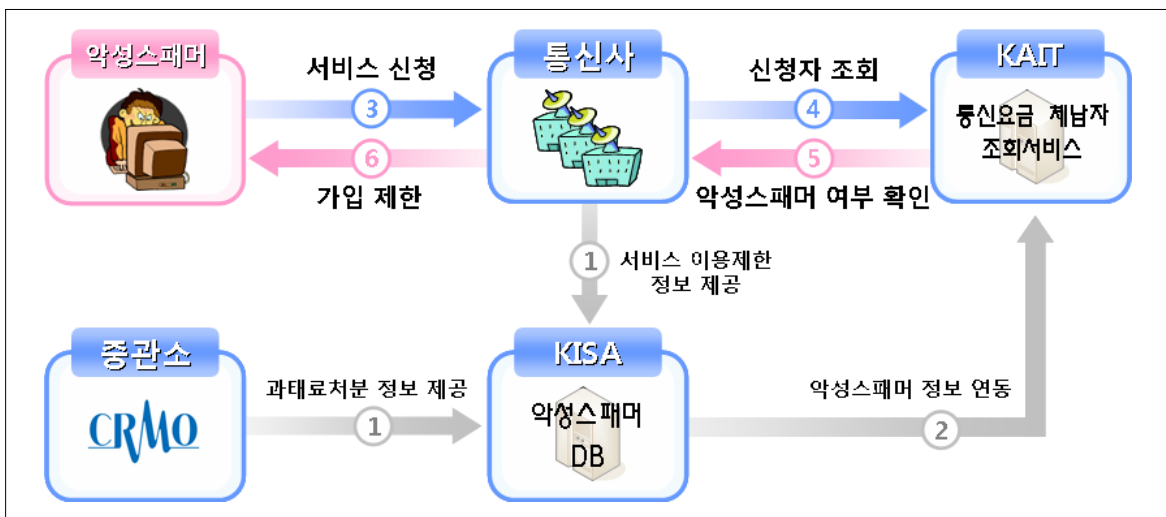
-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대상자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이통사에 상시 제공

< 악성스팸머 DB 등록정보 >

개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행정처분·이용제한 일자 및 사유
법인	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행정처분·이용제한 일자 및 사유

※ 정보통신산업협회(KAIT)의 ‘방송통신 신용정보(요금 체납자)서비스’와 연동하여 통신사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

< 악성스팸머 서비스 가입 제한절차 >



□ 추진 일정

- '09년 하반기 이후 :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('08.11월 제출)의 통과이후 시행 예정

③ **명의대여 핸드폰 방지 민·관 공동 홍보**

개 요

- 이통사 등과 공동으로 명의대여 핸드폰 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
 - 일반 이용자 및 이통사 대리점 대상을 명의대여 핸드폰 방지 등 안내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- 명의대여에 의한 低신용자의 핸드폰 개통이 만연하여 스팸 등 위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,
 - 명의대여 핸드폰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저조

□ **추진 방안**

- (이용자 대상) 명의대여에 의해 개통된 핸드폰의 악용 위험, 스팸 발송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
 - 관련 내용을 주제로 공익광고 송출 추진
- (대리점 대상) 명의대여 핸드폰 개통의 피해, 핸드폰 명의대여자·개통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안내
 - 안내 포스터 제작 및 전국의 이통3사 대리점·판매점 배포
 - ※ 대리점(약 7,350개), 판매점(약 28,500개)

□ **추진 일정**

- '09. 11~12월 : 포스터 제작·배포 및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
- '10년 이후 지속 추진

나. 취약점 개선을 통한 스팸문자 생성 억제

①	문자메시지 1일 발송한도 축소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개 요

- 불법 대량 스팸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1일 발송한도 조정 (1,000건 → 500건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06. 8월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1일 1,000건으로 제한해왔으나,
 - 다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송한도 내에서 스팸을 분산 발송하는 사례의 증가로 인해 스팸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점차 떨어짐

□ 추진 방안

- 이통사의 1일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1,000건에서 500건으로 하향 조정
- 단, 정상 이용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한도를 초과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예외처리 절차 마련
 - 기존의 예외처리 대상자(1,000건 이상 발송가능)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치
 - ※ 예 : 동호회(신분증, 발송사유서, 회원리스트 확인), 관혼상제 일정 통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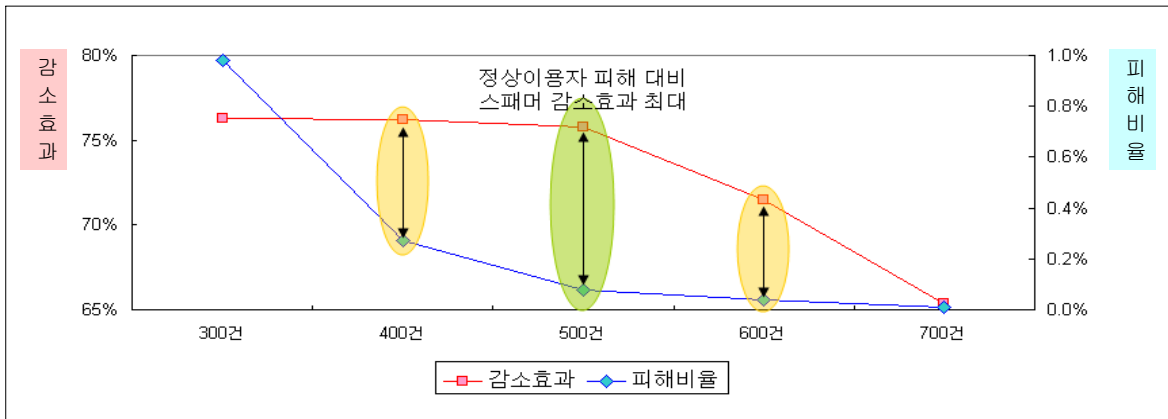
□ 추진 일정

- '09년 말 : 이통사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
- '10년 이후 : 문자메시지 1일 발송한도 축소 시행

500건 산정 근거

- 문자메시지 발송제한으로 스팸머가 아닌 정상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머 및 정상이용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태를 조사·분석
- 표본추출에 의한 스팸머(약 3천명)와 정상이용자(약 30만명)의 문자메시지 1일 최대 발송량 통계를 비교·분석한 결과 문자메시지 한도를 500건으로 축소하는 경우
 - 스팸머의 대부분(75.8%)이 1일 5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나 정상이용자의 경우는 극소수(0.08%)로 파악됨
 - 스팸머의 스팸감소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정상이용자의 피해 빈도를 적정수준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최적점으로 500건을 선정

< 스팸머 스팸감소 효과 vs. 정상이용자 피해빈도 분석 표 >



- ※ 스팸머 문자발송량 기준 : 스팸발송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제한(차단) 조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개월간 문자 발송량
- ※ 정상이용자 문자발송량 기준 : '08년 신규가입 이후 요금미납이나 이용제한 이력이 없는 자로서 최근 1개월간의 문자 발송량

② **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악용한 스팸발송 규제**

개 요

○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이용하여 스팸을 전송한 자(주로 대리운전)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-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구입하여 스팸(주로 대리운전) 발송에 악용하는 사례 증가
-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은 현재는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나,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 계약에 따라 기본료(월 25,000~27,000원)만으로 매일 발송한도(1,000건) 내에서 문자발송 가능하여
- 인터넷상에서 1대당 수십만원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음

□ **추진 방안**

- 스팸전송용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에 대한 제재 강화
- (KISA) 스팸의 발신번호로 접수 또는 포착된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추출하여 이통사에 통보
- (이통사)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이 스팸 발신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후 결과를 KISA에 피드백

이통사 서비스 이용약관의 '이용제한' 규정

· 고객이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, 이통사가 이용계약 해지 가능

□ **추진 일정**

- '09. 하반기 :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 악용 스팸발송 규제 강화

다. 전송·수신 단계에서의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

① 이통사,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

개요

- 문자메시지(SMS)의 발신·회신번호, 본문내용, 발송패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발·제공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스팸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광고문구를 변칙적으로 표기하는 등 스팸기법은 점차 변형되고 있으나,
 - 이용자가 등록한 금칙어·차단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을 걸러내는 현재 수준의 필터링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스팸차단이 어려움

□ 추진 방안

- 현재 SKT가 제공중인 스팸차단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KT, LGT에도 확대 적용
 - SKT에서 제공하는 동서비스가 스팸의 사전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타 이통사로 확대 적용

SKT의 스팸차단서비스 사례 분석

- SKT는 '07.12월부터 스팸차단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 중
 - ※ '09. 9월 현재, 약 200만 가입자 서비스 이용
- < 서비스 이용자(약 1천명)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>

 - 스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용자 약 3배 증가 : 18% → 51%
 - 하루 3통 이상 스팸을 받는다는 이용자 40% 감소 : 50% → 21%
 - 필터링 서비스 이용 후 스팸이 줄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77%

o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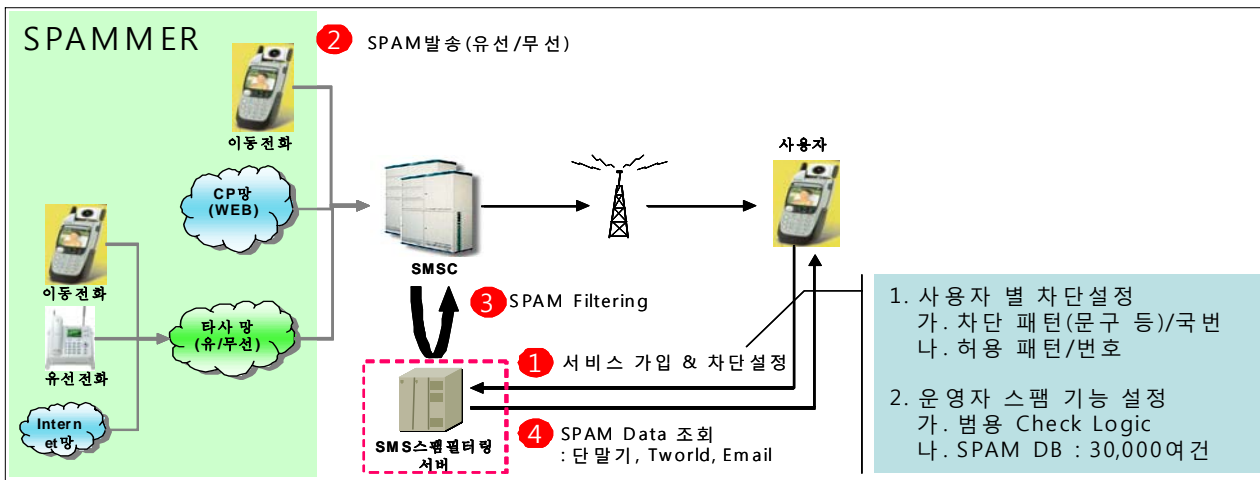
- 이용자가 받을 문자메시지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사전에 스팸 문자를 차단해주는 서비스

차단 서비스 기능 예

- 등록된 허용/차단 패턴에 따라 스팸여부에 대한 확률적 판단을 스스로 학습
- 형태소 분석을 통해 변칙표기 스팸도 필터링(예, ‘대출’ → ‘대출’)
- 은행, 증권, 대형마트 등 정상문자는 필터링 되지 않도록 white list 운영

- 스팸 차단한 내역을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매일 전송하여 이용자가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< 스팸차단 서비스 구성도 >



□ 추진 일정

- o '09. 12월 : (SKT) 스팸차단 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
- o '10. 1분기 : (KT, LGT) 스팸차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

②	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차단기능 개선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개 요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기존의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 |
|--|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- 현재 시중에 출시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스팸차단번호를 10~20개만 등록할 수 있어 이용자가 직접 스팸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움
- 스팸차단번호 등록과 스팸신고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가 스팸을 수신한 후 이중으로 조치해야 하는 불편 초래

□ **추진 방안**

-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
 - 이통사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연간 스팸수신량 및 필터링에 따른 단말기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차단 번호수를 200개 이상으로 결정
 - 이용자가 한도(200개)를 초과하여 스팸차단번호를 등록하는 경우, 오래된 번호부터 자동으로 대체되도록 구현
 - ※ 선입선출(FIFO: First-In-First-Out) 방식으로 대체
- 이용자가 스팸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, 해당 스팸문자의 발신 번호가 자동으로 스팸차단번호로 등록되도록 하는 기능 구현

□ **추진 일정**

- '10. 하반기 : 스팸차단기능 개선 단말기 출시

라. 스팸 신고편의 증진 및 재송신 방지

① **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화**

개요

○ 이통사간 상이한 현행 간편신고방식을 표준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○ '07. 2월부터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간편신고서비스 개시

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서비스

· 핸드폰 상에서 간단한 메뉴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, '09.8월 현재까지 동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 총 298종(2,741만대, 전체의 57%) 보급

○ 이통사별로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메뉴 조작방법(UI: User Interface)이 상이하여 이통사간 간편신고빈도의 편차가 심함

- 신고빈도를 고려할 때 KT의 방식이 가장 조작이 수월한 것으로 판단됨

< 이통사별 간편신고 UI 비교 >

이통사	간편신고 UI
KT, LGT(일부)	· 문자/음성통화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신고메뉴 선택 (일부 휴대전화는 스팸메시지함에서 신고 불가)
SKT, LGT(일부)	·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대상 문자/음성통화 선택

□ **추진 방안**

○ 간편신고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KISA와 TTA가 공동으로 KT의 방식을 기반으로 간편신고 표준안을 작성하여 단체표준으로 제정 추진

o 표준화 내용

- 간편신고 메뉴 조작방법(UI) 통일

- 문자메시지 수신함(또는 음성통화)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간편신고가 가능토록 구현
- 신고메뉴 명칭, 이용방법 설명(신고접수·처리 주체, 정보수집 항목, 활용범위·목적 등), 신고완료 알림메시지 등 표준 문구 마련

- 이통사를 거쳐 KISA로 전달되는 신고메시지의 구성항목 통일

< 신고메시지 표준안 >

헤더	예약	발신번호	회신번호	수신시간	수신번호	신고시간	제목	모델명	내용
----	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	-----	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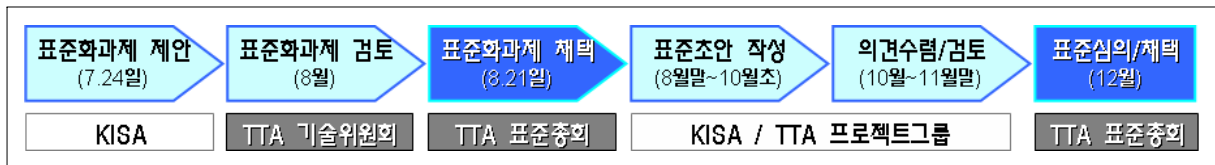
- 신고된 스팸번호의 스팸차단번호 자동 등록

- 간편신고시 해당 스팸의 회신번호가 단말기의 스팸차단번호로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기능의 구현을 표준화

□ 추진 일정

- o '09. 10~11월 : 표준문서 초안에 대한 유관기관·사업자 등 의견수렴
- o '09. 12월 : 표준문서 심의 후 채택(단체표준 제정)
- o '10년~ : 휴대전화 단말기 개발시 표준 참조 유도

< 표준화 일정 프로세스 >



②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

개 요

○ 스팸 신고인에게 유사한 스팸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이용자가 수신동의를 하였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발송한 적법광고를 불법스팸으로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
 - ※ '08년 전체 성인물 스팸 신고건의 51%는 수신동의 또는 거래관계가 확인된 적법광고임
- 이용자가 신고한 스팸을 더 이상 수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전송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 강구 필요

□ 추진 방안

- 스팸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전산화하여 등록하고 광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(광고수신거부시스템) 개발하고 신고 번호를 광고전송자가 조회하여 스팸을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
 - ※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번호 등록·삭제 가능하며, 등록된 번호는 1년간 유지

개인정보활용에 따른 법적 검토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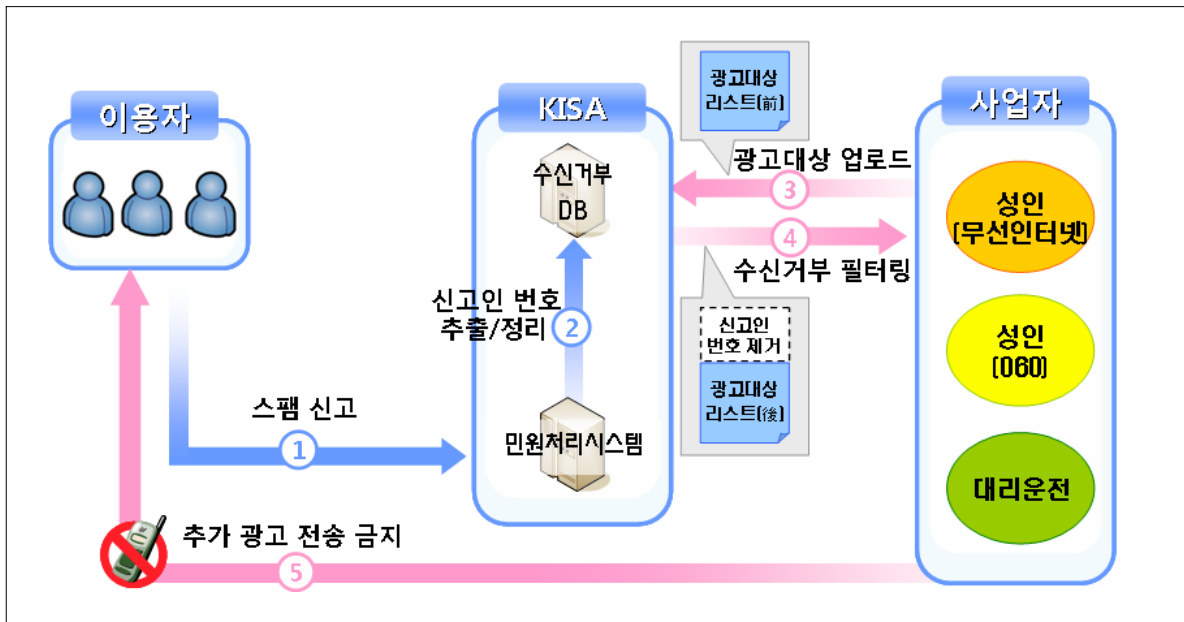
- 신고인이 스팸신고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(휴대전화번호)를 유사 광고의 재전송방지를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행안부와 사전협의
 - ※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개인정보파일의 보유·변경시 사전협의)에 의한 의무사항
- 행안부에서 보유목적 변경에 동의

○ 휴대전화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시행

- 광고전송자가 광고대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“광고 수신거부시스템”의 목록과 비교하여 등록된 수신처에는 광고를 발송하지 않도록 권고
- 광고전송자는 수신거부자로부터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성인 및 대리운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방침

○ 향후 적용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

< 수신거부 프로세스 >



□ 추진 일정

- '09. 10월 : 광고수신거부시스템 구축(KISA)
- '09. 11월 : 성인·대리운전 사업자 대상 광고수신거부서비스 시행
- '10년~ :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

2. 이메일 스팸 방지대책

가. 스팸방지를 위한 이메일 인증 강화

①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차단

개 요

- 일반PC에서 악성코드에 의해서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강구 및 적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제적인 전문스파머가 국내 일반PC에 악성코드를 투입하여 전 세계로 스팸발송하는 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
 - ※ 한국 좀비PC 증가율 4,236%(시만텍, '08.10월보고서)
 - ※ 전 세계 스팸의 3.7%(6위)가 한국에서 발송(소포스, '09년 연간보고서)
-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년전부터 이미 스팸방지를 위해 좀비PC에 의한 이메일발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, 관련 분야에서의 국내의 조치는 다소 미흡

□ 추진 방안

- 좀비PC가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팸 전송시에 좀비PC 활용하는 메일발송 포트(25번)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범국가적으로 적용
 - 좀비PC는 스팸메일의 발신자를 위조하고 다량의 스팸을 25번 포트를 통하여 발송

- 정상적인 메일의 경우에도 25번 포트를 활용하나 사용자에게 대한 인증이 가능한 포트(587번)를 활용하도록 유도
 - 기존의 일반에서 활용하는 웹메일은 80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MS의 Outlook Express를 비롯한 대부분의 메일 프로그램이 25번 포트를 활용하여 메일을 발송하므로 악성 코드에 취약
 - 일반PC의 프로그램으로 메일을 보낼 때는 25번 포트가 아닌 보안성이 강한 587번 포트를 활용하도록 유도
- 587포트의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포트전환(25→587포트)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ISP와 홍보캠페인을 추진
 - 일반PC의 경우, 궁극적으로 25번 포트에 대한 메일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· 추진
 - ※ 포탈 웹메일이나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(약 95%)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트설정 변경 불필요
 - ※ 일본·호주(90% 이상), 미국(약 35%), 홍콩(56%) 등의 경우 25번 포트에 대한 사용금지가 이미 상당한 정도 진행됨(KISA, '07년 조사결과)
 - ※ OECD, MAAWG 등 국제협의체와 각국의 스팸방지 가이드라인·실행규약 등은 이메일 발송포트를 587포트로 대체하도록 ISP 등에 권고

□ 추진 일정

- '10년 상반기 : 국내 ISP와 25번 포트의 대체방안 협의
- '10년 중 : 25번 포트 단계별 차단 및 변경 의무화 방안 확정

② 이메일 발신지 인증기술 도입 확산

개 요

- 메일을 발송하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서버인지를 확인하는 메일서버등록제를 확산시켜 비정상적인 메일 전송을 사전에 차단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이메일 수신측에서 발신측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서버인지를 확인하여 정상메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메일서버등록제 (SPF : Sender Policy Framework)’의 적용이 적극적이지 않아 비정상적인 메일의 전송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
 - SPF 확인기능 도입에 대한 인식 및 기술적 이해 부족 때문으로 추정

□ 추진 방안

- 국내 도메인등록대행자(30개社)를 통해 등록된 모든 일반 도메인을 대상으로 메일서버등록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현황 조사
 -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메일서버에 메일서버등록제(SPF)를 적용하도록 권고
- 국내 메일서버에서 활용하는 스팸차단프로그램에 SPF 적용확인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

□ 추진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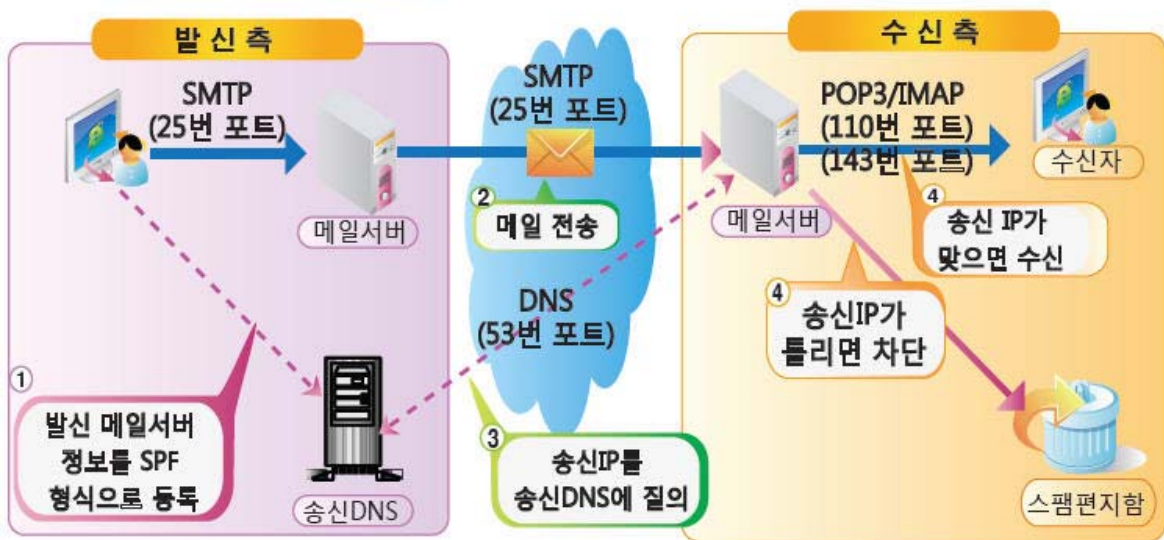
- '09. 11월 : 국내에 등록된 도메인의 메일서버등록제 적용 현황 조사
- '10년 ~ : 메일서버등록제 확산 추진

메일서버등록제 설명

o 이메일 수신측에서 발신측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서버인지를 확인하여 정상메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인증기술

※ 국내 이메일 발신측의 SPF 적용률은 56%로 전 세계 평균인 52%를 상회하고 있으나, 수신측에서 이를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임

o 메일서버등록제 활용 절차



- ① 이메일 발신측이 사전에 메일서버 정보를 DNS에 등록
- ② 발신측이 수신측으로 이메일 전송
- ③ 이메일 수신측에서 발신측 메일서버 정보를 DNS에 질의하여 확인
- ④ 발신측 메일서버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서버이면 이메일을 수신하고, 그렇지 않으면 전송을 차단

나. 스팸전송 차단기술 이용 활성화

① **실시간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보급 확대**

개 요

○ 개인·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스팸차단에 활용토록 지원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- '06년 이후 스팸차단을 위해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를 제공하여 왔으나, 최근 이를 활용하는 기관·업체 수가 점차 감소
- 개인이나 영세기업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메일서버 S/W의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

<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이용기관 현황 >

구 분	'06년	'07년	'08년	'09.8월
이용기관·업체 수(누적)	533개	2,279개	2,287개	1,734개

□ **추진 방안**

- 주요 메일서버 종류별로 최신버전에 적합한 스팸 발신자 목록 활용 매뉴얼을 전자책(e-Book) 등의 형태로 제작 및 배포
- 개인·영세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웹호스팅 업체를 대상으로 메일서버에 적용 유도

□ **추진 일정**

- '09. 12월 :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활용 매뉴얼 제작·배포
- '10년~ : 웹호스팅 업체 대상 메일서버에 스팸 발신자목록 활용 유도

3. 과태료 징수를 제고방안

①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관리 강화

개 요

-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2.2%에 불과('09.8월말 기준)
 - 처분자 중 개인의 비율은 매우 높은(92%) 반면, 주거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절차를 거치는 비율이 25%에 달함
 - ※ 과태료 체납자의 대부분은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低신용층으로 추정

□ 추진 방안

- 유관부처의 협조로 행정정보망에 대한 조회권한을 확보하고, 이를 통하여 획득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강화
 - ※ 행정안전부의 '주민등록 등초본'(소재지), 국토해양부의 '차량등록 원부'(재산정보)
-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 TF(중앙전파관리소 '61기동팀') 운영 활성화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체납자 제재방안 추진

제재 방안	적용 대상
· (신용정보 제공)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신용정보 집중기관(KAIT)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이통사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	·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이 경과한 자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
· (관허사업의 제한)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	·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
· (감치)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검찰에 감치신청(30일 이내)	·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자

□ 추진 일정

- '09. 10월 ~ : 신용정보 집중기관(KIAT)에 과태료 체납자료 제공

② 스팸규제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

개 요

-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스팸 과태료 처분자의 경우, 대부분 低신용자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납부능력에 비해 과도하여 납부능력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
-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어 재발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 유발

□ 추진 방안

-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
 -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벌적 차원에서 증가해온 과태료 부과금액이 하향 조정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
 - ※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(750→1,500→3,000만원), 현재는 평균 1,500만원 수준
- 신원확보와 소재지 추적이 힘들어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악의적 불법스팸 행위(불법도박, 대출, 의약품 등)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기획수사를 통해 형사처벌로 조치
 - ※ 도박/대출/의약품 스팸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재화·서비스에 대한 광고전송이므로 형사벌 대상(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) ▶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□ 추진 일정

- '09. 9월 ~ : 악의적 스팸(도박/대출/의약품)에 대한 수사 강화
- '09년 말까지 :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

4. 국제 공조 강화

① 아태지역 스팸 공동대응체계 구축

개 요

○ 중국, 일본,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와 스팸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 위치하면서 불법스팸을 국내로 다량 발송하는 문제가 심각

※ '08년 스팸수신량 조사결과, 국외IP로부터 발송된 스팸이 전체의 63% 차지

□ 추진 방안

- 아태지역 주요 국가의 스팸대응 기관별로 수집·탐지하여 보유하고 있는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를 실시간으로 공유

※ 「한·중·일 정보보호실무협의회」 및 「서울-멜버른 다자간 스팸대응 MOU」를 통한 합의('07년)를 토대로 KISA가 스팸정보 공유시스템 구축·고도화 추진 중

- 악성코드가 주입된 PC에 의한 스팸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25포트 제재정책 및 비정상적인 메일을 식별하는 메일서버등록제를 타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임

- 아태지역 국가와 공동협력 이슈를 발굴하여 협조하며, 특히 중국과는 정례적인 국장급회의를 추진

□ 추진 일정

- '09. 12월 : 스팸 발신자 목록(Black List) 공유시스템 고도화
- '10년~ : 중국, 일본, 호주 등과 실시간 스팸정보 공유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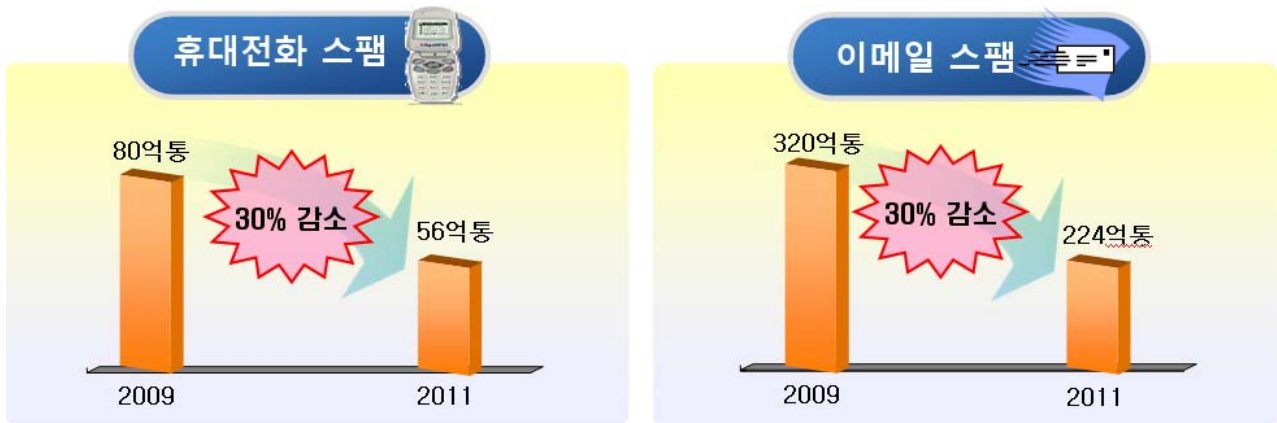
V.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1. 향후 계획

- 본 대책의 과제는 매년 실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·보완함
- 해마다 연동계획(Rolling Plan)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본 대책방안의 실효성을 제고
- ※ 본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붙임 참조

2. 기대 효과

- 본 대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1년말까지 “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의 30% 감소 효과” 기대



※ 스팸 유통량 산출 기준('09년 기준)

- 휴대전화 스팸 : 0.46통 × 이동통신 가입자 수(4,752만명) × 365일
- 이메일 스팸 : 2.4통 × 인터넷 이용자 수(3,658만명) × 365일

< 붙임 >

과제별 추진 일정

구 분		세부 추진과제	'09년			'10년		
			10월	11월	12월	상반기	하반기	
휴 대 전 화	가. 스팸어의 불법 휴대폰 개통 방지	① 휴대폰 개통 수 제한		■				
		② 악성스팸어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가입 제한			■			
		③ 명의대여 핸드폰 방지 민·관 공동 홍보		■				
	나. 취약점 개선을 통한 스팸문자 생성 억제	① 문자메시지 1일 발송한도 축소		■				
		②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악용한 스팸발송 규제	■					
	다. 전송·수신 단계의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	① 이동사,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				■		
		② 휴대폰 단말기 스팸차단 기능 개선					■	
	라. 스팸 신고편의 증진 및 재송신 방지	①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화	■					
		② 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		■				
	이 메 일	가. 스팸방지를 위한 이메일 인증 강화	①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차단				■	
② 이메일 발신지 인증기술 도입 확산				■				
나. 스팸전송 차단기술 이용 활성화		① 실시간 스팸 발신자 목록 보급 확대			■			
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		①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관리 강화	■					
		② 스팸규제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	■					
국제 공조 강화		① 아태지역 실시간 스팸정보 공유체계 구축				■		